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55

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김상훈·김선교·박대출

김승수 · 이달희 · 김예지

정희용 · 김정재 · 엄태영

이종배 · 신동욱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지방세법」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,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,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 어 있지 않아 「지방세법」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 는 상황임.

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,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16조의2).

법률 제 호
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"제68조"를 "제60조제6항, 제68조 및 제152조제 2항"으로, "지방소비세"를 "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" 로, "제71조"를 "제60조제7항,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16조의2의 제목 중 "지방소비세"를 "지방소비세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제68조"를 "제60조제6항,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"으로, "지방소비세"를 "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"로, "제71조"를 "제60조제7항,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국고금"이란 다음 각 목의 1. 자산을 말한다. 가. (생략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「지방세법」 <u>제68조</u>에 나. -----<u>제60</u>조제 따라 국가가 징수한 <u>지방</u> 6항. 제68조 및 제152조 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 제2항-----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 ----<u>담배소비세</u>, 지방소 비세 및 지방교육세-----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----제60조제7항, 제71 조 및 제152조제2항-----다. • 라. (생 략) 다. • 라. (현행과 같음) 2. ~ 4. (생 략) 2. ~ 4. (현행과 같음) 제16조의2(국가가 징수한 <u>지방소</u> 제16조의2(국가가 징수한 <u>지방소</u> 비세의 납입) 「지방세법」 제 비세 등의 납입) -----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 --제60조제6항, 제68조 및 제 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152조제2항----------<u>담배</u>소비세, 지방소비세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 및 지<u>방교육세-----제6</u> 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0조제7항, 제71조 및 제152조
라 납입하여야 한다.	제2항